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설 명 자 료</h1>	
배 포 일	2020. 2. 27. / (총 2매)	담당부서	보육기반과
과 장	김 우 중	전 화	044-202-3580
담 당 자	오 성 일		044-202-3581

◆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과 동일하게 실시 중이고, 외부인 출입제한, 교재교구 및 빈번 접촉부분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

(2월 27일자 세계일보, “‘긴급돌봄’ 시간 짧고 감염 우려 커...‘돌봄 공백’ 어쩌나” 보도 관련)

□ 기사 주요내용

- 정부에서 긴급돌봄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,
 - 일부 학교가 긴급돌봄을 정오까지만 제공하기로 하는 등 운영 시간이 너무 짧은 데다 감염 우려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긴급돌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잇따름

□ 설명 내용

- 어린이집의 경우,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중입니다.
 -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(~19:30)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, 이용 사유에도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.
- 긴급보육과 관련한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, 시·도별 콜센터, 시·군·구 보육 담당 부서, 어린이집 이용불편·부정신고센터 (1670-2082)에 신고할 수 있고,

- 긴급보육 미실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합니다.
 - *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, 영유아보육법 (제44·45조), 시행규칙(별표 9)에 따라 시정명령(1차), 운영정지(2차 1개월, 3차 3개월, 4차 6개월) 처분
-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은 출입 제한하고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,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